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5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가 자치구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구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며, 보훈대상자의 권리보전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 수당 금액 표기 삭제(안 제10조)
- 나.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안 제10조)
- 다.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삭제(안 제11조제1항, 부칙 제2항)
- 라. 중구 생활안정수당 신설(안 제10조,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 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지원과, 전화 : 02-3396-5306, 팩스 : 02-3396-8721, email : ksj0105@junggu.seoul.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을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를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보훈예우수당 : 월7만원” 을 “보훈예우수당”으로, 제2호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을 “생활안정수당”으로, 제3호 “보훈의 달에 50,000원을 지급” 을 “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제4호 “설, 추석에 50,000원씩” 을 “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 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2009.5.20.)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2010.6.23.)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u>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 위로금의 지급</u>)</p> <p>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u>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u>,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훈예우수당</u> : 월7만원 2. <u>유공자 사망위로금</u> : 200,000원 3. <u>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u> 4. <u>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u> 	<p>제10조(<u>보훈예우수당 등 지급</u>)</p> <p>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u>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u>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훈예우수당</u> 2. <u>생활안정수당</u> 3. <u>유공자 사망위로금</u> 4. <u>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u>
<p>제11조(<u>수당 등 지급대상자</u>)</p> <p>① <u>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 <u>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u></p>	<p>제11조(<u>수당 등 지급대상자</u>)</p> <p>① <u>수당 등 지급대상은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일 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 <u>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u></p>

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별지제1호)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명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증명서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없음
2. 주민등록 등본 1부(※ 행정정보 품종 이용으로 거주기간 등 확인하고 생략) 3. 본인 등장사본 1부.	

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별지제1호)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훈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신청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한국은행부설 학진사망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 학진)	
	<input type="checkbox"/> 보훈예우 수당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수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시, 단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신청인 제출시류	담당 공무원 학진사망 (행정정보 처리처 흥오로 거주기간 확인)
비	1.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1부 (중구 관할면서장 :)
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등장사본 1부	2. 난파공무원의 연간세 등록비가 없는 경우 신청인 입소 증명
류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삭제·이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예우수당 및 배운 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및 제 (성명·보훈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훈예우수당 및 이관을 각각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p>부칙(2009.5.20)</p> <p>① (생 략)</p> <p><u>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u></p> <p>부칙(2010.6.30.)</p> <p>① (생 략)</p> <p><u>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u></p> <p><u><신 설></u></p>	<p>부칙(2009.5.20.)</p> <p>① (현행과 같음)</p> <p><u>② (삭 제)</u></p> <p>부칙(2010.6.30.)</p> <p>① (현행과 같음)</p> <p><u>② (삭 제)</u></p> <p><u>부칙(시행일)</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훈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신청수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		<input type="checkbox"/> 보훈예우수당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수당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생활안정수당으로</u> 신청함.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일월년

십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_____)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십칠일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삭제·이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